

해양수산부 훈령 제719호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 이유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관리 항만이 시·도지사에게 전부 이양됨에 따라 시·도지사를 본 지침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서 작성 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발주청(용역감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을 반영하는 등 현행 지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항만법」 개정(2020. 2. 18.)에 따른 지침 적용범위 조정(안 제2조, 제3조, 제26조, 제28조)
- 지방관리 항만이 시·도지사에게 전부 이양됨에 따라 시·도지사(산하기관 포함)를 본 지침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문구 삭제
- 나. 해양폐기물관리법 분리 제정(2019. 12. 3.)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 및 관련 개정사항(준설토사 처리 활용방안) 반영 등(안 제6조)
- 다. 제안서 작성 시 안전·보건사항 검토 의무화(안 제14조)

- 건설엔지니어링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안서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이행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항목 추가
- 라.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발주청(용역감독자)의 관리·감독 강화(안 제13조, 제16조, 제24조, 제26조)
- 용역 착수 시 계약자의 신고서류 구체화(안 제16조)
 - 참여기술인 교체 시,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 당시 평가기준·방법을 적용하도록 명시(안 제24조)
 - 기본계획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 본부에서 2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6조)
- 마.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2조)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 및 관련 지침 명칭 반영(안 제27조)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조정(안 제28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추가(안 제29조)
 - 공사기간 산정 및 적정성 검토 방법·절차 등 추가(안 제29조의2)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2조)
- 바. 기타,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우리말 등으로 용어 수정
-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책임기술자”를 “책임기술인” 등으로 용어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만법」, 「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건설공사 용역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기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제3조제1호 중 “장 및 시·도지사”를 “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를 ““용역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로, “및 「기술사법」 제6조”를 “및 「기술사법」 제6조”로, “기술사중 용역”을 “기술사 중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시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주함에 있어서”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으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응할”을 “참여할”로, “책임기술자”를 “책임기술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을 반영하고 설계용역업자”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반영하고 설계용역사업자”로, “경쟁력이 제고될”을 “경쟁력을 높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작성하여야”를 각각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비”를 “실비(實費)”로, “명시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질의에 대해”를 “질의를”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여하여서는 아니”를 “주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방파제, 호안”을 “방파제(防波堤), 호안(護岸)”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전되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저 준설토사”를 “보전되도록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 18조제1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로, “농업용 토양에 활용 등)등을 검토 하여야”를 “해수욕장의 양빈 등) 등을 검토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에”를 “법에”로, “건설기술자가”를 “건설기술인이”로, “함에 있어서”를 “할 때에는”으로,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작성하여야”를 “에 따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을 “「건설공사의 설계 도서 작성기준」”으로, “참고하여야”를 “참고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반조건”을 “모든 조건”으로, “설계하여야”를 “설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차단하여야”를 “차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수록하여야”를 각각 “수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을 “공고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혹은 변경”을 “변경”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간소화하여야”를 “간소화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명시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

해야”로, “표기하여야”를 “표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록하여야”를 “수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을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건설CALS포탈시스템(국토교통부)””를 ““건설사업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을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으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기하여야”를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의”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함에 있어”를 “시행할 때”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용역비 산정)”을 “(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안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용역비를 산정하되 별도로 추가 산정이 가능한 항목 또는”을 “「건설엔지니어링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산정하되,”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를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역비”를 “건설엔지니어링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출하여야”를 “산출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련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설계용역 기술자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매뉴얼”을 ““건설기술용역사업 평가기준(PQ·SOQ·중심제) 매뉴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능여부”를 “가능 여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본문 중 “500억 원”을 “500억원”으로, “타당성조사용역 포함”을 시행하고자 할”을 “타당성조사용역을 포함한다)를 시행하려는”으로, “학계·타”를 “학계·다른”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시행”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00억 원”을 “500억원”으로, “타당성조사용역 포함”을 “타당성조사용역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5. “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 중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세부평가기준”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용역착수보고”)를 (“용역착수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기획재정부) 제13조”를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에는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내역서, 책임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를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자로 하여금”을 “책임기술인에게”로, “의한 과업일보”를 “다른 작업일지”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명령의 이행여부”를 “다른 명령을 이행하는지”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작성·보관하여야”를 “작성·보관해야”로 한다.

제20조 중 “입회하여야”를 “입회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다른”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승인사항에”를 “승인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야기하는”을 “일으키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발주청으로부터”를 “발주청에서”로, “인계·인수서”를 “인계인수서”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참여기술자의 관리)”를 “(참여기술인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기한 기술자를 동등”을 “제시한 기술인을 같은 수준”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체는 당해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당시의 제4조제4호나목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명기한 기술자가”를 “제시한 기술인이”로, “있는지 여부”를 “있는지”로, “그러하지 아니한”을 “그렇지 않은”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명시하고, 이에 소요되는”을 “명확히 기록하고, 이에 필요한”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반영하고자 하는”을 “반영하려는”으로, “참여기술자”를 “참여기술인”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개최하여야”를 “개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최종보고회 60일 이전에 1회 이상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되, 기본계획 또는 총사업비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사전 협의 후 2회(사업계획 초안 마련 후 1회, 사업계획 수립 후 마무리 단계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실·국”을 “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

한”을 “따른”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를 “시공과정의 안전성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을 “설계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기본설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① 발주청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계자에게 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산정근거를 포함한다)을 산정하도록 하고, 용역 준공시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대상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적정성 검토 방법 등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재활용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를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완료되면”을 “끝나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를 “작성·제출해야”로, “의하여 참여기술자별 세부과업수행분야를 명시하여

야”를 “따라 참여기술인별 세부과업수행분야를 기록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시하여야”를 “명확하게 기록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용역의 평가”)를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3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장래수요추정”을 “장래수요 추정”으로 하고, 같은 란 사목 중 “다음 내용”을 “다음내용”으로 하며, 같은 란의 12)제2호 아목 중 “관련하여 과업 포함여부”를 “관련한 과업을 포함할지”로 하고, 같은 란 차목 중 “대체시설 필요 여부”를 “대체시설이 필요한지”로 하며, 같은 란 카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저촉되는 관련법규의”를 “관련법규에 어긋나는지에 관한”으로, “제반자료”를 “모든 자료”로 하고, 같은 란 하목 중 “지장이 없”을 “지장을 주지 않”으로 하며, 같은 12) 제3호나목 중 “기타 선박”을 “그 밖의 선박”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12) 제3호나목 중 “(어획량·어획고·어장·어기), 기타”를 “(어획량·어장·어기), 그 밖의”로 하고, 같은 란 사목구분의 과업의범위란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2) 중 “기준연도”를 “기준년도”로,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하고, 같은 란 9)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목 제4호라목 중 “토성시험”을 “토양 성질 시험”으로 한다.

별표 2의 설계도서 목록의 비고란 기호(·) 중 “규격:A4”를 “규격: A4”로 하고, 같은 표 설계도서의 내용의 내용란 기호(-)구분의 내용란 기호(-) 중 “제반규정”을 “모든 규정”으로 하며, 같은 란의 기호(-)구분의 내용란 기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란의 기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란의 기호(·)구분의 내용란 기호(·) 중 “예:”를 “예:”로 하고, 같은 란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위치평면도의 공사구간 표시방법

전년도 이전 기시설: 검은색

전년도: 녹색

금회 시공: 붉은색

장래 계획: 노란색

별표 2 내용의 내용란 기호(-)구분의 내용란 기호(-)구분의 비고란 기호(·)의 구분의 내용란 기호(·) 중 “예:”를 “예:”로 하고, 같은 란의 기호(·)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하며, 같은 란의 기호(·)구분의 내용란 기호(-) 중 “하고자 할”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란의 기호(-) 중 “곤란할 때”를 “곤란한 경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기호(-) 중 “공사개요 :”를 “공사개요:”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총공사비 :”를 “총공사비:”로 하며, 같은 서식 기호(-) 중 “도급액 :”을 “도급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관급자재대:”를 “관급자재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역 착수 신고서

용역명:

계약액: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기한: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1. 예정공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계약내역서
4. 책임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인 면허수첩 사본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표성명: (인)

작업일지

책임기술인: (인)

일자	20 . . . 날씨		착공일		
작성자			준공예정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인명	전일까지	금 일	누계	특기사항
과 업 수 행 내 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다만, 지면 부족시는 별도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수 명 부

수명연월일	
지 시 자	
수명사항	제 목: 내 용:
조치결과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용역지시서

지시번호: 용역명: 제목:	용역감독	
내용: 20 수신: 책임기술인 (인)		

지시번호:	
용역명:	
제목:	20
내용:	
수신: 용역감독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참여기술인별 세부과업 수행분야

착 공 일:

준 공 일:

분야	직책	자격종목 및 등록번호	생년월일	회사내 직 위	성 명	서 명	용역과업 수행내용	참여 기간

확인자(감독자): (인)

※ 작성요령

- 분야: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를 기록
2. 주요 구조물은 상기 외에 별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수행할 시는 구조물명이나 공사명으로 분야를 기록
예: 교량, 부두,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
- 직책: 분야별에서 수행시의 책임성 정도로서 사업책임기술인(PM), 책임기술인(분야) 참여 기술인으로만 분류
- 자격종목: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을 기록하고 하단에 등록번호를 기록
- 수행내용: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심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수행한 핵심공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제47조에 따른 해양수산부가 소관하는 건설공사의 <u>건설기술용역</u> 세부시행절차,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항만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항만을 관리하는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기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따</p>	<p>제1조(목적) ----- ----- ----- ----- <u>건설엔지니어링</u> ----- ----- -----.</p> <p>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u>업무기준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u></p>

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으로서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시행하는 기관의 장,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말한다.

2. (생략)

3.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항만건설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 「어촌·

제3조(정의) -----

1. -----

-- 장을 -----

--.

2. (현행과 같음)

3. “용역사업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

----- 및

「기술사법」 제6조-----

----- 기술사 중 건설

엔지니어링-----

-----.

4.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

2조제5호의 시설, 「신항만건

설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신

항만건설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의 항만재개

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용역시행 방침) 발주청은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정한 용역시행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과업범위
가. 주요과업의 내용 및 소요 비용
나. (생략)
4. 용역업자의 선정방법
가. · 나. (생략)
5. 참가자격(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 공동도급의 가능여부와 분야, 대표회사 조건, 책임 기술자의 자격 등)
6. ~ 8. (생략)

제5조(분야별 설계용역 표준과업 지시서 적용) ① 설계용역 표준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및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등에 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용역시행 방침) -----
----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

----- 수립해야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필요한 비용
나. (현행과 같음)
4. 용역사업자-----
가. · 나. (현행과 같음)
5. ----- 참여할 ----

----- 책임 기술인-----
6. ~ 8. (현행과 같음)

제5조(분야별 설계용역 표준과업 지시서 적용) ① -----

과업지시서(항만·도로·철도 분야, 국토교통부)를 기본으로 단계별(조사업무, 계획업무, 설계업무) 사업특성에 적합하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을 반영하고 설계용역업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설계상세도 작성범위와 시공상세도 작성범위가 구분되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 및 사업량 변경 등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가는 실비 정산하도록 하며, 추가 조사항목과 조사비 등 직접경비는 설계변경하여 정산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존 기초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수급인이 발주청

----- 작성해야 -----.

②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반영하고 설계용역사업자-----

----- 경쟁력을 높일 -----
----- 작성해야 -----.

③ -----

----- 작성해야 -----.

④ -----

----- 실비(實費) -----

----- 명확하게 기록해야 -----.

⑤ -----

에 서면 제출한 질의에 대해 14
일 이내에 서면 회신하도록 과
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과업대상 및 범위) ① 삭
제

② 용역은 그 종류에 따라 별표
1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여
건과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
여 과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용역의 과
업내용에 국가 기본계획 검토를
포함하거나 실시설계용역의 과
업내용에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진단을 포함하는 등 해당
용역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
는 사항을 과업으로 부여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평
면배치와 단면결정을 위한 수리
모형실험 또는 수치모델실험을
과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 또는 단순 연
장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질의는 -----

----- 작성해야 -----.

제6조(과업대상 및 범위)

② -----
----- 포함해야 -----.

----- 고려하
여 -----.

③ -----

----- 주어서는 안
-----.

④ 방파제(防波堤), 호안(護岸)

----- 포함해야 -----.

----- 그렇지 않다.

⑤ 준설량이 50만m³ 이상인 경우에는 자원활용 극대화 및 해양환경이 보전되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저준설토사 처리·활용 방안(각종 건설용 재료 활용, 습지·인공섬 조성, 농업용 토양에 활용 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설계·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 ① (생략)
- ② 제1항의 경우 발주청은 미리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발주청 등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내용·기간·관리, 도서의 작성 기준, 측량·지반조사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⑤ -----

----- 보전되도록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 -----
----- 해수욕장의 양빈 등) 등을 검토해야 -----
-----.

제7조(기본설계·실시설계용역 수행 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협의 해야 -----.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법에 -----

----- 건설기술인이 -----
----- 할 때에 -----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한 기
준은 분야별(항만, 도로, 철도)
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
하고, 내용은 별표 2를 참고하
여야 한다.

제9조(기본설계) ① 상위계획에서
결정된 사업계획과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사의 규
모, 시설물의 배치 및 구조형식
등 공사계획의 제반조건 및 기
본적인 사항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목적 구조물의 배치계획 및 형
식은 비교안과 함께 시공성, 경
제성, 유지관리, 안정성 및 환경
등 종합적인 검토와 구조물의
구조형식, 기본치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적, 경제적 판정
에 의한 구조물의 최종안을 결
정하여야 한다.

③ 도면작성 범위 및 목록을 공
중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실시

--에 따라 작성해야 -----
-----.

② -----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
성기준」-----
----- 참고해야
-----.

제9조(기본설계) ① -----

----- 모든 조건 -----
----- 설계해야 ----
-----.

② -----

----- 결
정해야 -----.

③ -----
----- 제시해야 -----

설계 수준의 상세도면 작성 관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 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9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 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⑧ (생략)

제10조(실시설계) ①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설계조건에 근거하여 공사에 필요한 상세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

----- 차단해야 -----
--.

④ -----

----- 수록해야 -----
-----.

⑤ -----

수록해야 -----.

⑥ (현행과 같음)

⑦ -----

----- 공고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 -----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실시설계) ① -----

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로 확정해야 할 요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혹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발주청의 과업지시서에 근거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는 설계(상세)도와 시방서로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시공상세도 승인에 따라 공사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공종에 대한 설계도서는 작성범위 및 목록을 공종별로 제시하여 과도한 설계도면 수량이 되지 않도록 간소화하여야 한다.

⑤ 필요시 설계자의 의도, 시공자의 역할,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주석란에 명시하여야 하며, 단순·반복되는 도면은

작성해야 -----.

② -----

-- 변경-----

----- 해야 -----.

③ -----

----- 작성해
야 -----.

④ -----

----- 간소화해야 -----.

⑤ -----

----- 명확하게 기
록해야 -----

관련 도면표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모든 도면은 전자화된 형태로 작성하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9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⑨ 실시설계도면은 별표 3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설계(상세)도 견본도면은 “건설CALS포탈시스템(국토교통부)” 게재 내용을 참고한다.

제11조(시공상세도) ① 시공에 필요한 상세설계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여건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 표기해야 -----
--.

⑥ -----

수록해야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
-----.

⑨ -----

----- “건설사업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
-----.

제11조(시공상세도) ① -----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 작성해야 -----.

② 철근 전개도·세부상세도·재료표·접이음과 가시설 등은 현장에서 시공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도면 주석란에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공상세도 작성 비용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시공상세도 작성비 요율”에 근거하여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협의 등) ① 발주청은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 용역의 주요과업 내용, 시행방안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용역시행기간은 과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비 산정) ① 발주청은

② -----

기록해야 ----.

③ -----

-----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
----- 반영해야 -----.

제12조(사전협의 등) ① -----

----- 협의해야 ----.

② ----- 시행할 때

----- 제공해야 -----.

③ -----
----- 정해야 ----.

제13조(건설엔지니어링비 산정)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제안서 작성지침을 입찰일 10일 이전에 관보, 일간신문, 컴퓨터통신(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서의 평가) ① 발주청은 용역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생략)

제16조(용역착수보고) ①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제13조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용역착수신고서에는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자면허수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의 감독) ① 용역감독

-----.

<삭 제>

제15조(제안서의 평가) ① -----
-- 용역사업자-----

----- 평가기준-----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용역착수신고) ① -----
----- 용역사업자-----

----- 제13조-----

-----.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착수신고서에는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계약내역서, 책임기술인의 선임계·이력서 및 기술인면허수첩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용역의 감독) ① -----

제20조(현지조사의 입회) 용역감독자는 계약자가 측량, 지질조사, 해상관측, 교통·환경영향조사 또는 각종 지장물·어업권조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21조(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 의무) ① 용역감독자는 계약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용역감독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붙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자는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의한 서류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하도급 관련 보고) 용역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자가 하도급 승인사항에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제20조(현지조사의 입회) -----

----- 입회해야 -----.

제21조(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 의무) ① -----

----- 제시해야 -----.

② -----

----- 보고해야 -----.

③ -----

-- 따른 -----
--- 보고해야 -----.

제22조(하도급 관련 보고) -----

-- 보고해야 -----.

1. ----- 승인사항을

--

2. (생략)

3. 계약자가 하도급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제23조(용역감독자의 인계·인수) 용역감독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용역감독자 변경을 통보 받았을 경우 용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참여기술자의 관리) ① 계약자는 용역수행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에 명기한 기술자를 동등 이상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 교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용역감독자는 제안서에 명기한 기술자가 용역에 참여하고

2. (현행과 같음)

3. -----

-- 일으키는 ----

제23조(용역감독자의 인계·인수) ----- 발주청에서 -----

----- 인계인수서----- 보 고해야 ----.

제24조(참여기술인의 관리) ① -----

----- 제 시한 기술인을 같은 수준 ----
----- . 다만, 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교체는 당해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당시의 제4조제4호나목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 제시한 기술인이 -----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
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
다.

제25조(현지사무실의 설치·운영)

- ① (생략)
- ② 발주청은 현지사무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이를 명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현지사무실 설치·운영비용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제안서에 사무실의 위치, 규모 및 참여기술자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한 현지사무실 설치·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용역보고회) ① 발주청은

- 용역착수 30일 이내 용역착수보고회와 용역과업 수행과정에서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제1항의 용역최종보고회 60일 이전에 1회 이상

있는지-----
-- 그렇지 않은 -----
----- 조치해야 ----
--.

제25조(현지사무실의 설치·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명확히 기록하고, 이에 필요한 ----- 반영해야 -----.
- ③ ----- 따라 -----
----- 반영
하려는 -----
----- 참여기
술인-----

첨부해야 ----.

제26조(용역보고회) ① -----

- -----

----- 개최해야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최종보고회 60일 이전에 1회 이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역착수보고회와 시·도 최종 용역보고회 60일 이전에 용역최종보고회를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사전협의 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계약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준공 이전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상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되, 기본계획 또는 총사업비 변경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관련 실국과 사전 협의 후 2회(사업계획 초안 마련 후 1회, 사업계획 수립 후 마무리 단계 1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

실국-----

④ -----
따른 -----

----- 보고해야 -----
--.

제2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
----- 수립해야 -----

----- 시공과정의 안전성이 확보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토안전관리원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따른다.

제28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에 검토를 의뢰해야 ---.

② -----

해야 -----.

③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
-----.

제28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설계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
----- 해야 -----
-----.

제87조제1항-----

-----.

1. -----

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3. (생략)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제29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 기본설계 -----

2. -----

----- 기본설계 -----

3. (현행과 같음)

4. -----
----- 기본설계 -----

제29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

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른다.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전문가에게 검토하게 해야 -----.

1. (현행과 같음)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지침」 -----
-----.

③ -----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검토) ① 건설 기술용역업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반영해야 ----.

제29조의2(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① 발주청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계자에게 대상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산정근거를 포함한다)을 산정하도록 하고, 용역 준공시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발주청은 대상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적정성 검토 방법 등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검토) ①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질기준 및 경제성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용역보고서의 제출) ① 계약자는 과업수행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별 세부과업수행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용역보고서에 인용자료를 수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를 각주 등의 방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출된 용역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안일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검토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②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

제31조(용역보고서의 제출) ① ----- 끝나면 -----
----- 작성·제출해야 -----
----- 따
라 참여기술인별 세부과업수행
분야를 기록해야 -----.

② ----- 명
확하게 기록해야 -----.

③ ----- 공개해야 -----.
----- 그렇지 않다.

제32조(용역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외에 설계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구조물을 포함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설계평가는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단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이 되며, 단원은 해양수산부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제3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②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따른다.

<삭 제>

제3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기준으로 -----

----- 해야 -----
--.